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공증 [법일반]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함. 공증은 행정청에 의한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은 다행을 전제로 하여 그 다행을 해결하는 판단의 표시인 것에 대하여 공증은 다행이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이 달리.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임. 이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각종의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여권발급, 검인 등이 그 예임.

공증오인설 [상표]

스위스의 판례, 독일의 학설의 입장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상표권은 공증오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된다고 하는 이론. 즉, 공증에게 오인, 혼동이 생기게 할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여 침해여부를 가리는 이론.

공증영역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보호받지 못하는 발명, 상업 표장 등 제반 창작물의 지위나 상태. 공증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된 창작물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제할 수가 있게 됨.

공증에 기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모두 청구항에 기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의 부분은 특허권자가 공증에 기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 사유 중 하나이다.

공존출원 [특허]

특허출원 후 그 공개 전에 제출된 동일 내용의 특허출원.(미국)

공존상표권 [상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상표사용에 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자도 상표권자와 같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그 상표의 등록 전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영업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

